

의안번호	2204545
의 퇴 인	정춘생의원
회 답 일	2024. 10. 30.
추 계 번호	24D42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10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1천억원씩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2조원이 되도록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5년 1,000억원 등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총 8조 5,000억원(연평균 8,500억원)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34년

(단위: 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출연규 모 상향 및 유효기 간 폐지 (안 제23조제1호 및 법률 제18545 호 부칙 제2조 삭 제 및 개정안 부칙 제2조 신설)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1,000	2,000	3,000	4,000	5,000	85,000	8,500
	2030	2031	2032	2033	2034		
	6,000	7,000	18,000	19,000	20,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1호,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삭제, 개정안 부칙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신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추가 확보(제1호) : 정부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 -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 - 2025회계연도부터 2033회계연도까지의 정부출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함(부칙 제2조 신설) 1. 2025회계연도에는 1조1천억원 2. 2026회계연도에는 1조2천억원 3. 2027회계연도에는 1조3천억원 4. 2028회계연도에는 1조4천억원 5. 2029회계연도에는 1조5천억원 6. 2030회계연도에는 1조6천억원 7. 2031회계연도에는 1조7천억원 8. 2032회계연도에는 1조8천억원 9. 2033회계연도에는 1조9천억원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1호,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삭제, 개정안 부칙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최종적으로 2조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증액된 정부출연금만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1조원씩¹⁾ 2031년까지²⁾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10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1천억원씩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2조원이 되도록 하며, 2031년까지로 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폐지하려는 것임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10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1천억원씩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2조원으로 증액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총 8조 5,000억원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25년~2034년의 기간 동안 총 15조 5,000억원임
 -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씩 총 7조원이 발생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정부출연금에서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000억원 등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총 8조 5,000억원임

1) 현행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을 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2)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생략)

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34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금(A)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0,000
	2030	2031	2032	2033	2034	
	10,000	10,000	0	0	0	
개정안에 따른 정부출연금(B)	2025	2026	2027	2028	2029	155,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2030	2031	2032	2033	203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C=B-A)	16,000	17,000	18,000	19,000	20,000	85,000
	2025	2026	2027	2028	2029	
	1,000	2,000	3,000	4,000	5,000	
	2030	2031	2032	2033	2034	
	6,000	7,000	18,000	19,000	20,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assembly.go.kr